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일 반 조 항

1.(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회 보험료 (일정기간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보험약관의 교부)

1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회사가 위 1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2 위 1 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의 고의.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위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 (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⑬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⑭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 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 1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9.(청약의 철회)

1 가계성보험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리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 (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10.(계약후 알릴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다만, 피보험자의 변경은 이 보험에서 담보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위 1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단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은 때도 위 3과 같습니다.

11.(피보험자의 변경)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에게 이 계약에서 담보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12.(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3.(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보험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 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4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14.(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1 제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로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위 1을 적용합니다.

15.(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효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 (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이율에 3%를 더한 이율 < 연11% > 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4 및 6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6.(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10의 1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앞뒤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2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위 2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10의 3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손해가 위 2의 ①,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②,③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7.(무효,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 이외의 사유로 무효,해지 또는 효력상실 (32의 1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된 경우에는 회사는 「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해지환급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회사의 보험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8.(차량보수비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계약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보수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5 년 만기형에 가입한 경우 : 3년 경과시점에서 20만원 지급

② 10년 만기형에 가입한 경우 : 3년 경과시점 및 6년 경과시점에서 20만원 지급

19.(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뺍니다.

5 년 만 기	10 년 만 기
300 만 원	납입보험료 전액 - 40 만 원

20.(손해의 통지)

1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관계 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구속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회사에 그 내용을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 (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22.(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3,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3.(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 (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1,000만원에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연령,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과 2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 (한팔 또는 한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 손(가락) 장해 및 발(가락) 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 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4.(벌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 정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5.(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 정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6.(형사합의 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 정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단서 (「별표3」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가 21일이상 치료를 받은 때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7.(견인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견인비용 등으로 2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출근 또는 퇴근시에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8.(차량손해위로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승용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승용차를 도난당하여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때에도 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차량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29.(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각각 22와 23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3 벌금,방어비용,형사합의 지원금,견인비용,차량손해위로금은 각각 하나의 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30.(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회사가 21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약관 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1.(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2.(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회사가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차량보수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 밖의 사항

33.(보험계약자 대출)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1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빼고, 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34.(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독촉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5.(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6.(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 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이 계약중 계약자 및 보험료납입명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 (이 약관에서 정한 금액,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38.(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중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다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9.(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천만인 운전자보험 특별약관

1.가족 주말교통상해 위험담보 추가약관

1.(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千萬人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보험기간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요일,국경일등을 포함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아래에 정하는 사고 (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 (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와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위 1의 교통승용구라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기차,전동차,기동차

③ 항공기,선박 (요트,모타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중기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2.(피보험자의 범위)

1 이 추가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3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와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2 위 1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위 1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만 1세 이상의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4 위 1,2,3 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5에 정한 사유로 발생된 손해

② 시운전훈련,경기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승강장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2,000만원을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5.(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 (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1,000만원에 「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6.(의료비 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에는 1 사고마다 이 추가약관에 따라 50만원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 의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부부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 는 千萬人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하 「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3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 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위 1,2 의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년 만 기	10 년 만 기
300 만 원	이 특약에 의한 납입보험료 전액

3.(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을 보험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4.(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 (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1,000만원에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5.(벌 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 정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 의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 정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형사합의 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 정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단서 (「별표3」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 (보통약관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가 21일이상 치료를 받은 때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8.(견인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견인비용 등으로 2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출근 또는 퇴근시에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차량손해위로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승용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승용차를 도난당하여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차량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10.(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18에서 정한 차량보수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생활유지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千萬人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을 때에는 입원 또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유지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19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위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19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방어비용 추가보상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千萬人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 정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보통약관 25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19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영업용운전자 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운행중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뺍니다.

5 년만기	10 년만기
300 만원	이 특별약관의 납입보험료 전액

3.(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을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4.(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1,000만원에【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5.(벌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 정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 정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방어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3.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8.(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18(차량보수비), 26(형사합의지원금),27(견인비용) 및 28(차량손해위로금)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1.가족 주말교통상해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토요일,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가족 주말교통상해 위험담보 추가약관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 (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피보험자의 범위)
1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영업용운전자 담보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1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2 위 1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위 1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만 1세 이상의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4 위 1,2,3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2,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4.(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1,000만원에【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5.(의료비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50만원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2 위 1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2.생활유지비 담보 추가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을 때에는 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유지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업용운전자 담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3.의료비 담보 추가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위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업용운전자 담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보험계약의 체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 (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 시점으로 봅니다.
2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4. 및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단,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3.(사고카드 계약)
1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위조·변조된 카드,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후유장해등급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6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귀의 청력이 50㎝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3.코(嗅)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15
4) 빗장뼈,가슴뼈,갈비뼈,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1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5
11)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4
13)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4) 한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34
15) 한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20
16) 한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8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15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0. 기타장해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상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반신불수가 된때	100
3) 양쪽 고환을 잃었을때	42
4) 지라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대	34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26

【별표2】

해약환급금 명세표(1종)

1.기본계약

■ 5년만기

경과기간	해지환급금
1년	387,400
2년	1,018,200
3년	1,700,000
4년	2,220,900
5년	3,000,000

■ 10년만기

경과기간	년 납	6 월 납	3 월 납	월 납
1년	79,400	89,300	96,000	98,100
2년	323,500	355,700	376,700	390,100
3년	587,300	643,600	680,100	705,700
4년	656,300	738,600	791,800	830,700
5년	947,100	1,057,500	1,128,700	1,181,900
6년	1,261,400	1,402,200	1,492,900	1,561,500
7년	1,384,900	1,558,500	1,670,400	1,755,700
8년	1,734,500	1,943,600	2,078,300	2,181,700
9년	2,112,500	2,360,000	2,519,300	2,642,200
10년	2,521,000	2,810,000	2,996,000	3,140,000

주) 주말교통상해 (개인) 책임준비금
-> 보험사고로 배우자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5년만기
해지환급금 없음.

② 10년만기

경과기간	년 납	6 월 납	3 월 납	월 납
1년	3,600	4,170	4,570	5,000
2년	16,550	18,380	19,590	20,690
3년	30,540	33,730	35,830	37,650
4년	45,660	50,330	53,380	55,980
5년	62,000	68,270	72,340	75,790
6년	79,670	87,660	92,840	97,200
7년	98,760	108,610	115,000	120,340
8년	119,390	131,260	138,940	145,340
9년	141,690	155,740	164,820	172,380
10년	165,800	182,200	192,800	201,600

2.부부담보특약 (배우자)

■ 5년만기

경과기간	해지환급금
1년	364,400
2년	948,500
3년	1,579,900
4년	2,262,300
5년	3,000,000

■ 10년만기

경과기간	년 납	6 월 납	3 월 납	월 납
1년	32,200	36,700	38,800	43,400
2년	144,700	159,400	167,800	177,800
3년	266,300	292,000	307,300	323,100
4년	397,700	435,300	458,000	480,200
5년	539,700	590,200	621,000	649,900
6년	693,200	757,600	797,100	833,300
7년	859,200	938,500	987,400	1,031,600
8년	1,038,500	1,134,100	1,193,200	1,245,900
9년	1,232,400	1,345,500	1,415,600	1,477,600
10년	1,442,000	1,574,000	1,656,000	1,728,000

3. 생활유지비담보 특약
해지환급금 없음

【별표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또는 제56조(갓길통행금지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건널목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8.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위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